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2. 17 선고 2018가단10783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1나53822 판결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. 2. 17 선고 2018가단107834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원욱

피 고 1. B

2. C

소송대리인 B

변론종결 2020. 7. 8.

판결선고 2021. 2. 17.

주문

1.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
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8. 10. 16. 체결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. 10. 22. 접수 제17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가.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 16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
나. D에게,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하여, 1)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. 10. 16. 접수 제17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2)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8. 10. 22. 접수 제175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,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상속관계

1) E와 F은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B와 D를 두었다.

2) E는 1984. 3. 3.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(이하 '이 사건 각 공유지분'이라 한다)에 관하여 1979. 8. 3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F은 1999. 8. 9. 별지 1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. 8. 2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, 2004. 2. 7. 별지 1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. 2. 6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(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.

4) F은 2014. 10. 23.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E, 자녀들인 피고 B와 D가 법정상속분(E 3/7 지분, 피고 B와 D 각 2/7 지분)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.

5) E는 2015. 5. 18. 사망하였고 그 상속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B와 D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1/2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. 다만 D는 2017. 12. 6. 이 법원 2017느단575호로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, 위 법원은 2017. 12. 29. D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는데, 당시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7 지분과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을 망 E의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다.

나. 원고의 피고 B와 D에 대한 채권

1) G는 2004. 8. 9. H공제회로부터 3,000만 원을 차용하면서,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G의 H공제회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(보험자 원고, 보험계약자 G, 피보험자 H공제회, 보험가입금액 29,810,000원)을 체결하였고, E는 원고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G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.

2) G가 2007. 7.경 H공제회에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07. 8. 2. H공제회에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25,072,457원을 지급하였다.

3) 원고는 2017. 11. 14. G와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 및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가소4442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8. 8. 29. “원고에게, ① G는 25,072,4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3.부터 2008. 3. 1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② 피고 B는 G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12,536,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3.부터 2008. 3. 1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③ D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G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12,536,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3.부터 2008. 3. 1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18. 9. 22.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위 판결을 ‘이

사건 확정판결'이라 한다).

다. 피고 B와 D의 2018. 10. 16.자 상속재산분할협의

피고 B와 D는 2018. 10. 16. 망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을 제2호증, 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8. 10. 16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. 10. 23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(2014. 10. 23.은 망 F이 사망한 날짜이다)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라.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18. 10. 16.자 증여

피고 B는 2018. 10. 16.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피고 C는 2018. 10. 22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(12,536,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3.부터 2008. 3. 1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)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(이하 '이 사건 제1 피보전채권'이라 한다)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한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8. 10. 16.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②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이 전부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C

사이에 다툼이 없다.

그런데 피고 B가 2018. 10. 16.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피고 B의 적극재산은 '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'만 남게 되었다.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2018. 10. 16. 기준 시가가 1,523,3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'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피고 B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'의 2018. 10. 16. 기준 시가는 761,670원($= 1,523,340\text{원} \times 1/2$)으로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. 결국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 C은 채무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나. 피고 C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3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원(12,536,2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8. 3.부터 2008. 3. 11.까지는 연 1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)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(이하 '이 사건 제2 피보전채권'이라 한다)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다만, D가 망 E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2 피보전채권의 책임재산은 D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한정된다.

망 E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7 지분과 이 사건 각 공유지분임은 앞서

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D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(= 3/7 지분 × 법정상속분 1/2)과 ② 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피고 D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이라고 할 것이다.

그런데 D가 2018. 10. 16. ‘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’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피고 B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상속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D의 책임재산은 ‘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D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’만 남게 되었다.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의 2018. 10. 16. 기준 시가가 1,523,3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‘이 사건 각 공유지분 중 D의 법정상속분(1/2)에 해당하는 지분’의 2018. 10. 16. 기준 시가는 761,670원(= 1,523,340원 × 1/2)으로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2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. 결국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(이 사건 제1 피보전채권의 채권자)와의 관계에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, 전득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/14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. 그러나 피고 B가 선의의 수익자, 피고 C이 선의의 전득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민수

(별지 1)

부동산 목록

1. 경남 함안군 J 대 695㎡
2. 경남 함안군 K 전 107㎡ 끝.

(별지 2)

부동산 목록

1. 창원시 마산회원구 L 도로 17.5㎡ 중 1,031분의 54 지분
2. 창원시 마산회원구 M 도로 23.1㎡ 중 1,031분의 54 지분
3. 창원시 마산회원구 N 도로 26.4㎡ 중 1,031분의 54 지분 끝.